
입 법 정 보

2019-1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
2.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
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5
5.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7
6.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7
7.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8
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9
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11
1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12
1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3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3
14.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4
1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5
1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6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7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7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림청).....	18
20.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8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19
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9
23.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
24.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
25.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21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1
27.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2
29.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3
29.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3
3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4
3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5

3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6
3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7
3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7
3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7
3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8
3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9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30
3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0
4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31
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1
43.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4
44.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4
45.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4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6
4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7
4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8
5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39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40
5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0
5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1
5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42
5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2
5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43
5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47
5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48
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9
6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50
6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50
62.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50

정부입법 예고

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2. 31. • 마감일자 : 2019. 2. 11.
- 만성질환의 증가 및 국민의 건강증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질병의 예방과 건강생활실천, 재활서비스 강화 등의 건강증진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보건소의 건강증진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보건소에 두도록 최소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에 작업치료사와 보건교육사를 추가함(안 제4조제 1항 별표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12. 31. • 마감일자 : 2019. 1. 21.
- 파산시 생계비 명목의 면제채산을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2호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파산 면제채산 금액 기준 개정(안 제16조 제2항)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현행 “900만원” 에서 “1,110만원” 으로 개정함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8. 12. 31. • 마감일자 : 2019. 1. 21.
- 시행 규칙에 명시된 일본식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로 적절하게 표기하고, 별지 서식의 기관명칭과 근거법령 오기(誤記)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제처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대상인 “등급분류필증”을 우리식 한자어인 “등급분류증명서”로 개정(안 제9조, 제11조, 제13조, 별표 제5호)
- 나. 기관명칭 및 근거법령 오기 정정(안 별지 제3호서식, 제25호서식)
 - 1) 별지 제3호서식 상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별지 제25호서식 상 “시행규칙 제9조의3제5항”을 “시행규칙 제9조의3제4항”으로 근거법령 오류를 정비함

4.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12. 31. • 마감일자 : 2019. 2. 11.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법률 제16183호, 2018.12.31. 공포, 2019.4.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안 § 4)
 - 1)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을 포함
-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5 ~ § 8)
 - 1) 심사위원회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위촉위원 임기, 위촉위원 결격사유, 위원 제척·기피·회피사유, 의결 정족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
- 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안 § 11)
 - 1) 출연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회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출연금 지원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고 요구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라. 손해배상(안 § 12)

-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불가 사유·증빙자료·손해배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마. 분쟁처리(안 § 13)

- 1) 사업자는 분쟁처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하며, 분쟁처리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30일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바. 권한 등의 위탁(안 § 14)

- 1)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
사. 과태료 부과·징수(안 § 16)

- 1) 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가중·감경 근거 규정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31.
- 마감일자 : 2019. 2. 11.

- 「공공주택특별법」에 우선분양에 대한 협의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협의 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 사전 협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융자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사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현행법을 적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안 제56조제2항제3호,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 1)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협의 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을 분쟁조정 신청대상으로 포함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 조정신청에 대하여는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함

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사항 준용(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

1)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분양전환 시 사전협의, 분양전환 준비 기간 연장, 주택도시기금 지원, 임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도록 함

6.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31.

• 마감일자 : 2019. 2. 11.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분양전환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분양전환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할 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2개월로 연장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주려는 것임. 또한 우선 분양 전환을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분양전환을 선택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는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차인과 협의 의무화(안 제50조의3제2항)

1)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는 경우 사전에 분양전환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함

나. 분양전환 준비기간 연장(안 제50조의3제3항)

1)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을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으로 연장

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임차인 지원

- 1)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 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 기간 연장

- 1)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향후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않기로 한 임차인에 한한다)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4년의 기간 내에서 임대 기간의 연장을 요청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31.

• 마감일자 : 2019. 2. 11.

- 시공 중 중대한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자에 대한 별점조항 신설을 통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하여 건설현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및 공사중지 요건을 확대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서면 승인하고,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을 제한 및 위반시 별점을 부과하고, 가설구조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확대 및 명확화하고, 건설공사에 불량자재의 반입·사용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확대하는 등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명확화(안 제88조)

- 1) 영 제88조제1항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 대상에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한 경우를 포함(안 제88조제1항)
- 2) 영 제94조제1항의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안 제94조제1항)

- 나.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기관의 공사 중지 요건을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로 확대(안 제 88조제3항)
- 다.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승인시 심사결과를 판정하여 서면으로 인 또는 보완하도록 명시(안 제90조제2항, 제3항)
- 라.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업무 외에 공사현장의 다른업무 수행을 제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위반한 자에 벌점 부과(안 제91조제3항, 별표8)
- 마.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강화(안 제101조의2)
 - 1)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추가 및 대상을 명확히 명시(안 제101조의2 제1항)
 - 2) 안전성 확인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관계 전문가를 확대하고, 해당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소속된 직원은 관계전문가에서 배제(안 제101조의2 제2항)
 - 3) 가설구조물의 사용전 설치상태 확인을 위해 ‘감독 권향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에 ‘가설구조물의 설치상태 확인’ 업무를 추가(안 제59조제3항)
- 바. 건설공사에 불량자재의 반입·사용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확대(안 제95조제1항)
- 사.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115조제2항제6호)
 - 1)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 아. 중대건설사고 유발 시 벌점 신설(안 별표 8 제5호)
 - 1)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정함.

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31.

• 마감일자 : 2019. 2. 11.

- 건설사고 저감을 위해 최근 무선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바,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무선통신 등 첨단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를 통해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착공 전에 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현장 특성에 맞도록 실효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건설사고의 효과적인 저감을 도모하는 한편,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 제한을 명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품질관리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개선하여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입찰시 품질관리비에 대한 낙찰율을 배제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안 제60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

- 1) 무선통신 및 무선설비를 사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용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에 추가함.

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업무에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 제한을 명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시행규칙에서 삭제(안 제50조제3항)

다. 초급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대형건설공사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등 양성을 위해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조정(안 별표 5)

라. 건설공사의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입찰시 품질관리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안 별표 6)

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개선(안 별표 7)

- 1) 안전관리계획을 공사 착공 전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각 공종 착공 전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는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여건 분석 강화, 위험요소 발굴 및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추가 포함, 타워크레인 공사에 대한 수립기준의 구체화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함.

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31. ● 마감일자 : 2019. 2. 11.
-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당 거래 등으로 인한 중소 물류 기업 등의 피해를 보호하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등 물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이 개정됨. 물류 신고의 처리, 조정의 권고, 자료 제출 및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신고의 처리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 1) 물류분쟁으로 인한 신고내용 및 방법 등 신고의 절차를 정하고, 신고에 따른 사실확인, 처리기한 등 신고처리의 기준을 정함.
 - 나. 물류신고에 대한 조정 권고의 절차(안 제4조의4 신설)
 - 1) 신고자 등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내용, 절차 등 조정 권고의 절차를 정함.
 - 다. 자료 제출 및 보고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5 신설)
 - 1) 물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 라. 조사의 연기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6, 제4조의7 신설)
 -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조사의 연기 등의 기준을 정함.

1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2. 31. ● 마감일자 : 2019. 2. 11.
-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당 거래 등으로 인한 중소 물류 기업 등의 피해를 보호하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등 물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이 개정됨.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물류 신고에 따른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 물류관련기관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류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신설)

1) 물류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신고의 접수, 조사, 조정의 권고 등으로 정하고, 신고센터의 구성원 등을 규정함.

나. 자문위원회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1) 물류분쟁 신고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

다. 보복의 금지 및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27조의4, 제27조의 5)

1) 물류의 신고 및 신고에 따른 조사 또는 보고 등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보복금지를 규정하고, 물류신고센터 직무자에 대한 비밀 누설, 목적 외에 이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함.

라. 물류신고센터 사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51조의2 제5호, 제6호 신설)

1) 신고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11.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8. 12. 31.

• 마감일자 : 2019. 2. 11.

○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권자와 같이 매년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외국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도주한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이 되어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지급을 일부 유보하되, 당사자가 복귀하여 수사나 형사재판이 재개되었을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하여 해당 급여가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12. 31. • 마감일자 : 2019. 2. 11.
- 인정도서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국정 검정도서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인정도서는 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대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교과에 자유발행제를 도입하고, 인정 취소 절차 완화 등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교과용 도서의 개발, 선정 및 활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인정도서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국정 검정도서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인정도서는 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대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교과에 자유발행제를 도입하고, 인정 취소 절차 완화 등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교과용 도서의 개발, 선정 및 활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1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9. 1. 2. • 마감일자 : 2019. 2. 11.
-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등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852호, ‘18. 10. 16. 공포, ‘19. 4.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1)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안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으로 개정함

나.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안 제40조에서 제43조까지)

- 1)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5조, 제47조)

- 1)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함

라. 규제의 신속확인(안 제54조)

- 1) 규제의 신속확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마. 실증을 위한 특례(안 제55조에서 제57조까지)

- 1) 실증을 위한 특례 신청방법,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손해배상 방안(안 제58조, 제59조)

- 1)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사. 임시허가(안 제62조, 제63조)

- 1) 임시허가 신청방법,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규제특례(안 제67조에서 제85조까지)

- 1)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14.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9. 1. 2.
- 마감일자 : 2019. 1. 22.

○ 소속 군 및 졸업시기와 관계없이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재학생으로서 지원하여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학사 정시 선발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재학생으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학사 정시 선발자)의 장려금 지급 시기를 개정함.

- 1) 지급시기를 ‘사관후보생 교육기관 입교 전’ 까지로 개정하여 소속 군 및 졸업시기와 관계없이 대학재학생 신분으로 지원에 따라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보장함.

1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3.
- 마감일자 : 2019. 2. 22.

○ 의료 해외진출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법률 개정 ' 18.9.18)에 따라 시행령 상의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명확히 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서식 개선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시점 정비(안 제3조제4항)

- 1)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신고접수 10일 이내’에서 ‘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조문을 정비함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 3.
- 마감일자 : 2019. 2. 13.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 법령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학위수여 요건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위수여의 요건 삭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와 제15조5호 삭제)

- 1) 상위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다른 전공의 학

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학사학위는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는 36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의 학점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학위수여 요건인 35학점 이상(제9조)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삭제

2) 제9조 조문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한 제15조5호 삭제

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부 개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4의2호 일부 개정)

1) 신청인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

1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9. 1. 4. • 마감일자 : 2019. 2. 1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자립생활지원형)에는 식당, 조리사 등을 두도록 하는 반면, 모자가족복지시설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8.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 7. • 마감일자 : 2019. 2. 18.
-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정기준 중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폐지, 고철의 경우에는 수출되더라도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

준 변경(안 제3조)

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시행
계획 수립주기가 5년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 제8조)

19.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 7. • 마감일자 : 2019. 2. 18.
- 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의 범위와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자의 편의
를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원순환성과
관리대상자의 범위와 규모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안 제13조제1항, 별표 1)
 - 나. 기존 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었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4회까지 확대(안 제19조제5항)

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 7. • 마감일자 : 2019. 2. 18.
- 주 5일 수업제가 현장에 안착됨에 따라 주 5일 수업제 실시 형태를
전면실시로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행사(체육
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수로 인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 5일 수업제의 실시 형태를 전면실시로 규정(안 제45조 제1항 개정)
 - 나.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안 제45조 제3항 신설)

2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18.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25호, 2018.12.4. 공포)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와 인증서 서식을 정함
 - 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정함

22.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17.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고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하여 소규모주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주류 출고가격 신고의 절차적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
 - 나.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 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하여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 라.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
 - 마. 주류 출고가격 신고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

2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29.
- 2018년 9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신설하며,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나. 주택,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함.
- 다.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요건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함.
- 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등은 실제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일 또는 최초 임대를 개시하는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등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합산 배제함.
- 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 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도록 함.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29.

○ 연구 인력개발비의 범위 및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조정하고,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성과급의 범위를 규정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희귀의약품의 범위를 조정하고, 입국장 면세점 내국물품 공급절차와 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절차를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마련하려 하는 것임.

25.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29.
- 그간 행정규칙에 따라 인지세를 부과한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도급 문서의 경우 이를 시행령으로 입법화하여 인지세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로 일원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29.
-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시 공제금액 적용 방법등을 규정하며, 주택 양도소득세 적정화를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보유기간을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외국납부 세액 공제 제도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29.
-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공제금액 추정시 자산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추정하도록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 그 추정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영농종사기간 요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함에 따라 기술적전 후방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실적에서 제외하는 한편,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29.
-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의 수취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선하며, 결제수단 간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전자지급수단의 영수증 등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개선하고,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에 중개용역을 추가하는 내용

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 증대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며,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29.
-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에 대한 즉시 손금 산입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미술품으로 확대하고, 적격 지출증명서류에 전자지급수단의 영수증을 포함하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0.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29.
-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도 및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지원을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및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농어업인과 무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3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29.
-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29.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시장 거래 물품 및 무형자산거래 등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을 보완하고, 국제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계좌 및 신고의무자 등 일부 요건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3.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29.
-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축소하며, 재조사 남용 방지를 위해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 요건을 합리화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4.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29.
- 국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매보증금을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제출가능한 서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35.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17.
-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 유예 규정을 신설하고 개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개항시설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체납처분유예 절차를 정하고 개항지정권자의 시설개선명령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미납부된 관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낮추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1. 29.
-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 및 탄력세율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는 한편,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시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 8.

• 마감일자 : 2019. 2. 18.

○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18.7월)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며, 소규모 건설기술용역업체 육성을 위하여 용역 실적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설계심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제9조제2항,제19조제6항~제8항)

-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설계심의 위원 정원이 부족하여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확보가 어렵고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연줄을 이용한 청탁 등 로비 가능성에 취약하다는 문제점 제기
- 2) 심의위원 부족해소, 사전 로비 차단을 위해 중앙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각발주청에서 설계심의위원 위촉시 전문성 및 객관성이 검증된 중앙설계분과위원회 위원 공동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며, 조달청이 지원·대행하는 사업에서 수요기관 직원도 내부위원 자격으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3) 심의위원 정원 증가, 중심위 위원의 공동활용, 수요기관 직원의 심의 참여 등에 따라 설계 심의의 전문성이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나.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심의 (제19조제4항)

- 1) 공사 발주시 표준작업량, 작업가능일 등에 대한 고려없이 과거 경험에 의존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부족한 공기로 인한 품질·안전 문제가 있었으며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18.7.12., 45회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에 따라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토록 의무화 추진
- 2)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공공시설물의 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
- 3)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전문가가 심의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품

질 및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관리 내실화 (제45조제1항)

- 1)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시행('14.5월~)하고 있으나, 하도급 신고 및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신생 업체는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도급만 수행하는 경향이 고착화
- 2)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 원도급 계약 실적과 하도급 계약 실적을 별도로 관리·통보하도록 명확히 하여 하도급 실적 관리를 내실화
- 3) 하도급 실적 관리가 내실화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수주하는 업체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38.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1. 9.

• 마감일자 : 2019. 2. 18.

○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및 ‘소속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징계감경 제외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타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여 법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및 주요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 1)

1)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소속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징계기준 마련

나. 징계감경 제외대상 비위 확대(안 제5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

1) 신설되는 징계기준인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갑질)’ 및 ‘조직 내 성 비위·갑질 등 주요 비위를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합리화(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1)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및 그 밖의 결정’ 으로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혐의사실 인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

라.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 정비 등(안 제5조 제2항제5호, 별표 1)

1) 성희롱 인용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정하고, 기존 ‘부정정탁’ 의 오탈자 표기를 ‘부정청탁’ 으로 수정

3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1. 9.
- 마감일자 : 2019. 2. 18.

○ 지방공무원의 병가 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령체계를 일치 시켜 복무관리의 혼선 등을 예방하고, 공가 규정에서의 국가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가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상향하고, 연가일수 공제 등에서 병가 관련 조항 신설

나. 공가 허가 항목 중 공무원 노조의 교섭위원으로 활동에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를 추가하고, 공가 허가 항목에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추가

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1. 9.
- 마감일자 : 2019. 2. 18.

○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에 한해 의회 의장에게

부여(안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32조)

1) 시·도 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

2) 신규임용시험은 시·도에 위탁수행 허용,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훈련기관은 시·도의 기관 공동 활용

나. 성비위 사실 신고 및 조사 규정 마련(안 제67조의2)

1) 성비위 사실을 알게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1. 9.

● 마감일자 : 2019. 2. 18.

○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업권을 신장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시행)됨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로,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은 3억9천만원 이하에서 5억4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2억7천만원이하에서 3억7천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제9조).

2)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

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제10조).

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각 담당업무를 정함(제11조).

4) 시·도가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2조).

4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9. 1. 9.
- 마감일자 : 2019. 2. 18.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설·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공포, 2019.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광사업 영업자 지위승계시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기존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 절차를 의무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57조의2, 제57조의4, 별표 17의3 및 별지 제39호의 2~4 서식 삭제, 별표 23 개정)

나.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기준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3, 별표 17의2 및 17의4 개정)

다. 관광사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을 추가함(별지 제23호서식 개정)

43.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9. 1. 9.
- 마감일자 : 2019. 2. 18.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양성교육과정 개

설·운영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 15860호, 2018. 12. 11.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교육의 위탁기관을 정하는 한편, 문화관광축제의 장기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등급제를 폐지하고, 관광사업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휴양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삭제)
- 나. 문화관광축제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1조의8제2항 및 제3항 개정)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또는 관광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함(안 제65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6호 개정, 제65조제8항 신설)
- 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65조제6항 및 별표 5 개정)
- 마. 전문휴양업의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원’의 등록기준 중 ‘사파리공원’ 운영조건을 삭제함(안 별표1 개정)

44.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9. 1. 9.
- 마감일자 : 2019. 1. 29

○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통고처분하도록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벌금상당액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1천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천만원의 벌금상당액을 통고하도록 함.
-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퍼센트, 2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6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

하는 벌금상당액을 통고하도록 함.

45.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 9. • 마감일자 : 2019. 2. 18.
- 학생부 및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조문 정비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학생부 및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1, 제23조의2)
 - 1) 학생생활기록 작성기준에 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을 삭제하고, 인적사항 항목과 학적사항 항목을 통합하고자 함(안 제21조 개정)
 - 2) 학생부 기재항목 중 수상경력(초등학교에 한함) 및 학생진로희망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2조 개정)
 -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제243호) [별지 제9호] 중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3조의1 신설)
 - 4)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점검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3조의2신설)
 -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 조문 정비(안 제72조 개정)
 -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위임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가 개정(대통령령 제28516호)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 기준 정비(안 제78조 개정)
 - 1)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54호)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4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 10.
- 마감일자 : 2019. 2. 19.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따라 경유철도차량의 원동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경유철도차량의 원동기 배출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17 6. 경유철도차량 원동기 신설)

4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 10.
- 마감일자 : 2019. 1. 21.
- 폐기물해양배출감축정책으로 인한 폐기물해양배출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기물운반선 공동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별표 14)

48.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9. 1. 10.
- 마감일자 : 2019. 2. 2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서 복지 관련 시설 제외 및 고시하는 시설 조항 삭제(안 제2조제1항 개정)
 - 나.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49.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관광체육부)

- 예고일자 : 2019. 1. 10. ● 마감일자 : 2019. 2. 2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문화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5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 11. ● 마감일자 : 2019. 2. 21.
-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용도지역간 변경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삭제(별표2 비고4 다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서 제외하였으나, 동 지역에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삭제함

51.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9. 1. 11.

• 마감일자 : 2019. 2. 20.

○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5945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처분 위반사실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정비(안 제11조 및 별표 1)

1) 「의료기기법」이 개정(' 18.12.11)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금액의 상한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개선방안에 따라 적정 과징율을 반영하여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등 산정기준 변경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위반사실의 공표 방법 및 내용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1)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 대한 처분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 18.12.11)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위반사실의 공표 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 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또는 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반된 의료기기의 명칭,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 신문에 게재하도록 함.

다. 업무의 위임범위 조정(안 제13조제1항)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법」 제31조의5 등에 따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이물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이물 혼입 원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후관리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고 있는 점 감안, 해당기관에게 업무를 위임함.

라. 이물 발견 사실을 미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1) 「의료기기법」 개정(' 18.12.11)으로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함.

2) 이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1차: 5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을 마련함.

5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9. 1. 11.

• 마감일자 : 2019. 2. 20.

○ '18.10.16. 상위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그 후속조치로 소방안전교육의 시기와 횟수를 상위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상위 법률에 따라 허가관청에서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명확히 함.

나. 소방안전교육의 횟수를 “2년에 1회 이상” 이란 문구를 추가하여 상위 법률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53.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11.

• 마감일자 : 2019. 2. 20.

○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2018. 12. 27.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해 규정한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제2조 삭제)

- 1)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

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 삭제(제3조 삭제)

- 1) 수급아동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수급아동에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하도록 함.

다.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관련 규정 삭제(제5조, 제8조 삭제)

-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액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라. 소득·재산 조사 관련 자료 요청 규정 삭제(제7조 삭제)

-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54.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 11.
- 마감일자 : 2019. 2. 20.

-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하고,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2018. 12. 27.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해 규정한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고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 및 재산의 환산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 (제2조 삭제)

1)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의 환산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

나.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확대(제3조 수정)

1)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다.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서면의 서식 삭제(제5조제2항, 제16조제2호 삭제)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액을 조사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서면 관련 규정을 삭제

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 결정 통지 기간을 단축(제7조제1항)

1)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 결정 통지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수정

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1. 11.

• 마감일자 : 2019. 1. 31.

○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 관리비 등의 장부 작성·보관 의무, 회계감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환경을 조성하며,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용부분의 변경 및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며,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 의무 신설과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 신설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